

강백년의 「옥하만록」 연구*

A Study on Kang Baeknyeon's *Okhamanrok*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1. 서 언	3.2 「한계속집」 수록본
2. 생애와 저술	4. 내용과 가치
2.1 생애	4.1 내용
2.2 저술	4.2 가치
3. 전 본	5. 결 언
3.1 버클리대학 단행본	<참고문헌>

< 초 록 >

강백년의 저술인 「옥하만록」은 간본은 없고, 사본 두 종만이 공개되어 전한다. 한 종은 미국의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단행본이다. 모두 23건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은 필자가 처음 소개하였다. 다른 한 종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고속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여기에 수록된 「옥하만록」은 버클리대학 소장본보다도 15건이 많은 38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은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책을 서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존하는 두 종의 「옥하만록」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한고속집」에 수록된 「옥하만록」이 정본(定本)이다. 둘째, 이 책을 완성한 시기는 1664년 이후이다. 셋째, 두 종의 「옥하만록」은 40곳에 문자의 차이가 있다. 넷째, 이 책에서 인용한 문헌은 「논어」, 「맹자」, 「중용」, 「주역」 외에 역사서, 고시 등 다양하다. 다섯 째,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은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要語: 「옥하만록」, 강백년, 강세황, 강빈, 강훈, 버클리대, 「한고속집」

* 본 연구는 2009년도 인천대학교(구 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cheon.ac.kr)

접수일: 2010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6일

<ABSTRACT>

Only two manuscripts of Kang Baeknyeon's *Okhamanrok* exist. One manuscript which contains 23 items is currently owned by the C.V. Starr East Asian Library of UC Berkeley, and first introduced by me. The other manuscript is included in *Hangosokjib*, a book owned by Ewha Womens University Library. It has a total of 38 items. The incidents or the records on the characters may assist the future research.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is book shows the following:

First, the manuscript in *Hangosokjib* own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is the original copy. Second, the book was finished after 1664. Third, there are forty differences in letters between the two manuscripts of *Okhamanrok*. Fourth, this book has cited books such as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Works of Mencius*, *the Doctrine of the Mean*, and *the Book of Changes*. The history of China and old poetry were also cited. Finally, the contents about the incidents and the characters have a great value as historical records.

Key words: *Okhamanrok*, Kang Baeknyeon, Kang Sehwang, Kang Bin, Kang Heun, UC Berkeley, *Hangosokjib*

1. 서 언

강백년(1603~1681)¹⁾은 조선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활동한 문신이다. 문한으로 이름이 높아 소북당파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추천되었고, 청백리에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다. 현전하는 그의 저술로는 두 종이 많이 알려져 있다. 한 종은 그의 시문들은 엮은 「雪峰遺稿」이고, 다른 한 종은 그가 만년에 간행한 「閑溪謾錄」이다. 「한계만록」은 선현들의 글 중에서 戒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명구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근자에 이 두 종외에 「옥하만록」이 소개되었다. 「옥하만록」은 저자가 견문한 사건이나 기록들 중에서 자손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연경의 옥하관에서 집필하였다고 한다.

「옥하만록」은 간본은 없고, 사본 두 종만이 공개되어 전한다. 한 종은 미국의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²⁾에 소장되어 있는데 단행본이다. 저자의 증손자이며 강세황의 넷째 아들인 강빈이 쓴 것으로 권수제면 우측하단에 그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옛 소장본이다. 모두 23건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은 필자가 처음 소개한 뒤³⁾ 유일본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⁴⁾

다른 한 종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고속집」에 수록되어 전한다.⁵⁾ 여기에 수록된 「옥하만록」은 버클리대학 소장본보다도 15건이 많은 38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5건의 내용 역시 자손들을 위한 계신의 글이다. 권수제면 우측하단에는 강백년의 인장이 찍혀 있어 이 책이 그의 옛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단행본 「옥하만록」과 「한고속집」에 수록된 「옥하만록」은 저자의 증손자와 저자의 옛 소장본이자 고사본으로 매우 귀중한 책이다.

「옥하만록」에 수록된 사건이나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다.

1) 자는 叔久, 호는 雪峰, 閑溪, 聽月軒, 시호는 文貞이다.

2) C.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ARE AC148 K3 1768). 이하 버클리대학으로 약칭함.

3)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문화사, 2008), 176-187.

4) 안세현, “옥하만록해제,”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5) 姜栢年, 「閑藁續集」 (고귀 811.085 강52호속).

더욱이 저자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에 실려 있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은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두 종의 사본을 비교 검토하고, 수록된 38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옥하만록 의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2. 생애와 저술

2.1 생애

강백년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나라의 기강과 틀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조 20(1642)년에 왕에게 먼저 心箴을 올린다.⁶⁾ 이어 동왕 25(1647)년에는 풍속의 교화를 위해 “인심이 바르지 못하고 습속이 야박해져, 역적에 관련된 범죄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고가 있으니 학교를 세워 교화를 밝힐 것”을,⁷⁾ 현종에게는 “여든 이상 된 노인에게 음식과 옷감을 내려줄 것”⁸⁾을 요청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급제는 밖의 일이다. 선비는 마땅히 충효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⁹⁾며 충효를 가장 중시하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어 청빈과 검소함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왕께 올리게 된다. 곧 “백성들이 사치를 숭상하니 성상께서 힘써 검소한 덕을 닦으시어 몸소 솔선하여 감화시키시라.”¹⁰⁾고 요청하여 현종이 이를 따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6) 『仁祖實錄』 43卷, 20年(1642) 10月 4日. “副校理姜栢年, 投進心箴, 上優答之, 命賜馬裝一部.” 이후 아들 강현은 저자가 인조에게 올렸던 이 심잠(養心養生同一法箴)을 숙종에게 다시 올렸음. 『肅宗實錄』 17卷, 12年(1686) 4月 16日. “校理姜覲疏, 論易乾坤卦義, 以其父栢年, 仁廟朝所進, 養心養生同一法箴, 上之, 上嘉獎之.”

7) 『仁祖實錄』 48卷, 25年(1647) 4年 10月 25日, “承旨姜栢年曰: 當今教化不明, 學校不興, 故人心不淑, 習俗偷薄, 致有逆節, 綱常之變. 興學校, 明教化, 此誠今日之急務也.”

8) 『顯宗實錄』 2卷, 1年(1660) 1月 3日, “賜老人年八十以上者, 歲饌衣資, 從承旨姜栢年之請也.”

9) 任相元, 行狀, 『雪峯遺稿』 卷30 附錄. “科第外事也, 士當以忠孝爲本矣.”

10) 『顯宗實錄』 12卷, 7年(1666) 10月 3日. “上引見諸臣, 左相洪命夏以冬雷之變, 請策免 … 栢年又奏曰: 近日紀律不嚴, 怙侈成風. 減省之責, 靡不用極, 而閭閻之間, 華美相尚, 聖明

한편 청나라가 황후의 죽음에 조선도 상복을 입고 곡하도록 요구함에 조정에서 이를 따르려고 하자 저자는 그러한 일이 예에 맞지 않다¹¹⁾며 논의를 그만 두게 하였다. 이렇게 저자는 검소, 효성, 풍속 등을 바로 잡아 국가의 사회적 질서를 정립하고자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였던 인물이었다. 임상원(1638~1697)이 “기질이 총명하고 효우가 있으며, 남에게 대할 때는 온화하고 스스로는 검약하였다.”¹²⁾고 한 바와 같이 저자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대개 비슷하다. 「숙종실록」에는 저자를 단정함과 청렴함을 갖추고, 시와 문장까지 뛰어났던 인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강백년은 사람됨이 단정하고 신량하였다. 아버지가 뇌물을 받은 죄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청렴을 지켜 책을 베개로 삼았고, 집안에는 세속적이고 잡된 것이 적었다. 한 때 남북당파에서 문장에 능하고 결백한 선비를 쉼 적에 소북당파에서는 강백년이였다.”¹³⁾

“강백년이 죽었다. 나이는 79세이다. 벼슬을 시작한 이후 두려워하고 삼가함이 특히 심하여 남의 과실을 논박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고 검소하여 좁고 쓰라림이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일찍이 시와 문장으로 유명하였다.”¹⁴⁾

세상이 탄복하였다¹⁵⁾는 저자의 문장은 일찍이 강원도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부터 알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관찰사인 白洲 李明漢(1595~1646)은 저자의 시재를 알아보고 홍문관에 추천까지 하였다.¹⁶⁾ 이후 현종 때는 김만기, 이단하, 이은상,

務盡儉德，以身先之，則自然觀感，而化之矣。上曰：然。”

- 11) 「顯宗實錄」 22卷, 15年(1674) 6月 17日. “禮判姜栢年上筭曰: 臣之愚慮, 有不然者. 皇后喪舉哀, 不載於五禮儀, 則癸卯於淺淡服舉哀, 已是無於禮之禮也.”
- 12) 任相元, 行狀, 「雪峯遺稿」 卷30 附錄. “公氣質清明, 操履端潔, 孝友睦姻之行 … 而對人則和氣藹然, 律己儉約.”
- 13) 「肅宗實錄」 4卷, 1年(1675) 閏5月 11日. “栢年爲人端良. 以其父受賂罪廢, 自守廉約, 枕藉書史, 門少塵雜. 一時數南北黨文翰清修之士, 小北則栢年.”
- 14) 「肅宗實錄」 11卷, 7年(1681) 1月 17日. “前判中樞府事姜栢年卒. 年七十九 … 栢年釋褐之後, 畏慎特甚, 未嘗論人過失, 律己清約, 寒苦如窮儒. 早以詞翰著名.”
- 15) 任相元, 行狀, 「雪峯遺稿」 卷30 附錄. “至其文章, 固爲一世所服.”, “若其文章之美 … 詩亦遍情而清健.”
- 16) 남용익, 「壺谷漫筆」 제45칙. “姜雪峯栢年, 佐幕關東時, 白洲爲方伯 … 還朝廷譽, 力主弘

남용익, 정두경 등과 함께 대제학 후보가 되었고,¹⁷⁾ 숙종즉위 초에는 임금이 오래 된 신하를 싫어하여 강백년을 실록당상에서 교체하자 뛰어난 문헌을 바꾼다하여 주위 신하들이 탄식하였다¹⁸⁾고 한다. 또한 문장을 통해 본 저자의 학문적 세계는 스스로 깨달아 독자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자의 학문적 특성에 대해 “학문적 기반은 아버지 죽창으로부터 전수받은 가학으로 태극일원론적 시각에서 세계와 인간을 해석하는 사상적 특성이 있었다.”¹⁹⁾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문헌 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의리에 근본하고 공사를 분별”²⁰⁾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후일 청백리에 選錄될²¹⁾ 만큼 청빈하게 산 탓에 그가 죽자 주위에서 초상에 필요한 구비를 지급해줄 것을 왕께 요청²²⁾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2.2 저술

저자의 저술은 시문집과 계신서로 나눌 수 있다. 시문을 모은 것으로는 후손들이 간행한 「설봉유고」²³⁾ 「한고」²⁴⁾와 「한고속집」²⁵⁾ 「설봉선생집」²⁶⁾ 등이 있다. 계신서로는 「옥하만록」 외에 「한계만록」²⁷⁾이 있다. 「옥하만록」은 자손들을 위해 남

錄, 詩名始播云.”

- 17) 「顯宗實錄」 20卷, 13年(1672) 閏7月 18日. “大提學圈點, 金萬基九點, 李端夏, 李殷相, 姜栢年八點, 南龍翼七點, 鄭斗卿六點也.”
- 18) 「肅宗實錄」 4卷, 1年(1675) 閏5月 6日. “獻納李沃, 正言朴信圭等言: ‘知中樞姜栢年 … 請姜栢年, 實錄堂上之任, 改差.’ 從之, 以吳始壽代之. 上偏惡舊臣, 故一啓即允. 以始壽之儉邪, 易栢年之文翰, 論者嘆之.”
- 19) 송인창, “설봉 강백년의 철학과 청백리정신,” 「대전대학교인문과학논문집」 34집(2002), 47.
- 20) 任相元, 行狀, 「雪峯遺稿」 卷30 附錄. “必根義理, 別公私.”
- 21) 「肅宗實錄」 29卷, 21年(1695) 7月 11日. “清白吏被選人. 故領議政李時白, 洪命夏, 右議政李尙眞, 判中樞趙綱, 姜栢年.”
- 22) 「肅宗實錄」 11卷, 7年(1681) 1月 18日. “時烈又言. 姜栢年居官清白, 初喪凡具, 必多艱窘. 令該曹題給, 則凡在瞻聆, 亦必聳動矣. 上從之.”
- 23) 「雪峯遺稿」,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03 (서울: 民族文化推進黨, 1993).
- 24) 「閑藁」, 필사본. 전11책중 책6, 8-11의 5책(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 25) 「閑藁續集」 1책(105장). 필사본(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 26) 「雪峯先生集」 1책. 필사본(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긴 계신서이고, 「한계만록」은 자신이 계신으로 삼아오던 선현들의 명구를 엮어 생전에 간행한 것이다. 이외에도 문헌상으로는 「한거만록」²⁸⁾이라는 저술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한계만록」과 「옥하만록」이 수록되어 있는 「한고속집」 등 두 종을 살핀다.

「한계만록」은 「대학」의 팔조목²⁹⁾을 모방하여 심학의 요어 및 고금의 가언선행을 모두 15권³⁰⁾으로 엮은 것이다.³¹⁾ 곧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선현들의 명구에서 찾아 놓았다고 볼 수 있겠다. 내용의 전개는 인용한 문구가 끝나면 끝에 출처를 밝히는 방식이다. 이 책의 간본으로는 숙종 5(1679)년 경³²⁾의 목판본이 전한다.³³⁾

이 책을 완성하게 된 연유에 대해 저자는 “경서 외에 사, 자, 집, 시문, 송나라 유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 및 황제들의 가르침과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명인들의 언행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일언반구라도 연대선후를 막론하고 보는 대로 수록하여 잊지 않으려 한 것이 한 질의 책이 되었다.”³⁴⁾고 하였다. 또한 저자가 “남에게는 이 책을 감추면서 스스로 경계하는 바탕을 삼았는데 스스로 한 평생 큰 허물이 없는 것은 이 책의 공이다.”³⁵⁾고 하였듯이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27) 「閑溪謾錄」 15권 4책, 목판본(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충남대학교 도서관, 간송미술관소장).
 28) 「燃藜室記述 別集」 卷14 「文藝典故」 野史類. “閑居漫錄 姜栢年.”
 29) 팔조목이란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등 세 가지 강령에 대한 실천 조목으로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등을 말한다.
 30) 格物致知, 明倫, 誠意, 正心, 忿懣(容量附), 恐懼·憂患(定力附), 好樂, 仕宦之慾(知足附), 仕宦之慾, 財利之慾(清儉附), 修身齊家·敬身·威儀之則, 慎言語, 待人總論, 治國平天下, 御下之方·處事之方·濟物之方·戒不肖訓 등의 15권.
 31) 任相元, 行狀, 「雪峰遺稿」 卷30 附錄. “哀輯心學要語, 及古今嘉言善行, 做大學八條目, 爲一書. 名曰; 閑溪謾錄.”
 32) 서문에 “今己未(1679)”라고 되어 있어 이 때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간행시기의 하한은 서명을 “만필”이라고 한 점을 보아 저자가 사망하기 이전인 1681년이다.
 3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閑溪謾錄」의 권책 편성은 제1책(권1-4), 제2책(권5-7), 제3책(권8-11), 제4책(권12-15)으로 되어 있다.
 34) 姜栢年, 「閑溪謾錄」 序. “凡經籍中, 一言半句, 苟有關於吾心身, 受用底說話, 則隨得隨錄, 以備遺亡, 積小成多, 仍以成一帙書 … 其所錄之說, 經書外, 若史若子集若詩文若宋儒諸說, 暨皇命人訓評, 以至吾東名人言行, 不拘其年代先後, 而並記之已云, 雜矣.”
 35) 任相元, 行狀, 「雪峰遺稿」 卷30 附錄. “名曰閑溪謾錄. 而藏諸巾衍, 未嘗視人, 惟庸爲自警

계신을 위해 모아 엮은 것이 이 책이다. 또 (처음 이 책을 완성한) “기묘년(1639) 이후 영욕을 겪은 지 41년이 지난 지금(1679) 내가 한 행동을 돌이켜보니 불만한 것 하나 없다. 이 만록을 열어보니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나는 지금 늙어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오직 나의 자손들이 이 책을 마음속에 경계와 두려움으로 두기를 바란다.”³⁶⁾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계만록」은 자신의 계신을 위해 평생 모아두었던 선현들의 명구들을 자신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간행한 것이었다.

한편 「한고속집」 1책과 「한고 5책³⁷⁾은 여러 측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들을 통해 저자의 많은 시와 문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한고속집」에서는 「옥하만록」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책의 권수 제면 우측하단에는 「岍山姜栢年叔久雪峯」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이 책들이 저자의 옛 소장본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고속집」에는 신도비명³⁸⁾부터 논 1수,³⁹⁾ 설 7수,⁴⁰⁾ 해 1수,⁴¹⁾ 서 1수,⁴²⁾ 표 2수,⁴³⁾ 노포 1수,⁴⁴⁾ 불운비답 5편,⁴⁵⁾ 잠 2수,⁴⁶⁾ 명 1수,⁴⁷⁾ 찬 1수,⁴⁸⁾ 시문 수십 수,⁴⁹⁾ 「옥하만록」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之資，而常曰：吾平生無大過者，皆此書之功耳。”

任相元, 「恬軒集」卷30 墓碑銘. 判中樞府事贈議政府領議政諡文貞姜公神道碑銘.

36) 姜栢年, 「閑溪謾錄」序. “己卯(1639)八月初五日丙申 閑溪病拙記 … 自己卯到今己未(1679)已四十一年, 其間閱榮悴悲權, 凡幾許而顧吾所以知行者, 無一可觀. 披覽此錄, 寧不愧哉. 余今耄矣, 更無如之何也. 唯冀吾子孫, 以此警惕于心, 毋或如乃翁之悠泛也夫.”

37) 강석중, 「한고해제(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2)」(서울: 평민사, 2008), 427-428.

38) 姜栢年, 「雪峰遺稿」卷29 神道碑銘. “嘉義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守知訓鍊院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襄公神道碑銘.”

39) 至貴論(「雪峰遺稿」卷23의 論에 미수록).

40) 理氣說, 五常四端說, 治心治病說, 禮樂說, 天人性命說, 理一說, 治心說(「雪峰遺稿」卷23의 說에 미수록).

41) 一物具太極解(「雪峰遺稿」에 미수록).

42) 贈別興海崔德會序(「雪峰遺稿」卷23의 序에 미수록).

43) 擬漢臣東方朔請勿起上林苑表, 擬晉會稽內史謝玄請勿召戴逵以遂其志表(「雪峰遺稿」卷22의 表箋에 미수록).

44) 疑漢西城校尉陳湯斬郅支露布(「雪峰遺稿」에 미수록).

45) 「雪峰遺稿」卷23에는 不允批答 5편이 있으나 이 5편은 미수록.

46) 敬天命箴, 理一箴(「雪峰遺稿」卷23의 箴銘에 미수록).

그런데 「한고속집」에 수록된 시와 문장, 그리고 「옥하만록」 등은 1690년대 중후반에 간행된⁵⁰⁾ 「설봉유고」에는 거의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한고속집」은 「설봉유고」를 간행하기 이전에 이미 유출되어 버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저술한 시문은 대부분 흩어져 없어지고,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⁵¹⁾고 한 임상원의 말과도 일치한다. 당시 저자는 자신의 저술을 감추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므로⁵²⁾ 가족들도 어떤 시문이 유출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3. 전 본

「옥하만록」은 현종 1(1660)년 10월 24일에 저자가 동지부사가 되어 동지사 조형 등과 함께 청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⁵³⁾ 연경의 옥하관에 체류하면서 집필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옥하만록」은 필사본 두 종이 전한다.⁵⁴⁾ 한 종은 미국의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단행본으로 23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영조 44(1768)년경에 저자의 증손자인 姜儻이 쓴 것이다. 다른 한 종은 「한고속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38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의 옛 소장본인 「한고속집」은 버클리대학 소장본보다 최소한 90년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47) 擬馬將軍銅柱銘並序(「雪峰遺稿」에 미수록).

48) 寶山驛亭贊(「雪峰遺稿」에 미수록).

49) 「雪峰遺稿」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50) 朴憲淳, 解題(「雪峰遺稿」,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03,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3).

51) 任相元, 「恬軒集」卷30 墓碑銘. 判中樞府事贈議政府領議政諡文貞姜公神道碑銘, “所著詩文, 多散佚, 若干卷藏于家.”

52) 任相元, 行狀, 「雪峰遺稿」, 卷30 附錄. “名曰閑溪謾錄. 而藏諸巾衍, 未嘗視人.”

53) 「顯宗改修實錄」4卷, 1年(1660) 10月 24日. “冬至使趙珩, 副使姜栢年, 書狀官權格等, 如清國.”

54) 최근에 간행된 이충렬의 「간송 전형필」(서울: 김영사, 2010, 91)에는 간송과 한남서림의 백두용이 「옥하만록」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저자의 문학적 창작력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형필이 수집한 한적의 목록집인 「潤松文庫漢籍目錄」(한국민족미술연구소 편, 서울: 평화당, 1967)에는 「옥하만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8건의 내용 중에서 초반부는 저자가 지방의 관료로 있을 때 보고들은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 중에는 강원과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사망사건이 많다. 저자가 강원과 충청지역의 지방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조 23(1645)년에 강릉부사,⁵⁵⁾ 인조 26(1648)년 3월에는 청풍군수,⁵⁶⁾ 효종 4(1653)년 5월에 충청감사⁵⁷⁾가 되어 1657년 6월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효종 9(1658)년 4월에는 강원감사⁵⁸⁾를 역임하다가 현종이 즉위한 1659년 6월에 좌승지로 중앙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옥하만록」에 있는 충청지역의 사건은 1648년 3월부터 1657년 6월까지, 강원지역의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라면 인조 23(1645)년, 대개는 1658년 4월부터 이듬해인 1659년 6월까지 직접 겪었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반부 이후부터는 중앙 정계에 있을 때 건문한 사건,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 옛 역사서를 인용한 것 등 다양하다.

「옥하만록」을 완성한 시기는 저자가 연경에 체류할 때인 1660~1661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강세황이 버클리대학 소장본의 後識에서 “순치 경자년(1660)에 조부가 연경의 옥하관에 체류할 때 기록하였다.”⁵⁹⁾고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2번째 내용 중에 나오는 지평 이광직(1632~1664)의 사망시점을 미루어 보면 완성 시기는 이보다 늦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이광직은 현종 3(1662)년 9월에 지평이 된 뒤⁶⁰⁾ 2년 뒤인 1664년 1월 11일에는 “전경문신이 되어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에도 참여하였으나”⁶¹⁾ 그 해 2월 7일 이전에 사망하였다.⁶²⁾ 물론 「한산이씨세보」에도 그가 갑진(1664)년 정월 28일, 33세의 나이로 사망한

55) 「備邊司謄錄」, 仁祖 23年(1645) 閏6月 18日. “啓曰, 江陵幼學沈之河等四人, 以本府儒品一百五十人各等狀, 來呈于本司 … 民失賢倅, 如喪其親, 謹備大米二百石, 願納官補用, 冀遂借寇之請云, 府使姜栢年 … 令該曹從民願仍任, 催促還官, 勿許納米何如, 答曰, 依啓.”

56) 「仁祖實錄」, 49卷, 26年(1648) 3月 7日. “上特命 … 前大司諫姜栢年, 爲清風郡守.”

57) 「孝宗實錄」, 10卷, 4年(1653) 5月 3日. “姜栢年, 爲忠淸監司.”

58) 「孝宗實錄」, 20卷, 9年(1658) 4月 5日. “姜栢年, 爲江原監司.”

59) 姜世晃, 「玉河漫錄」 後識. “順治庚子 先文貞公, 以副使赴燕, 留玉河館之日, 有此漫錄所錄.”

60) 「顯宗改修實錄」, 7卷, 3年(1662) 9月 26日. “李光稷爲持平.”

61) 「備邊司謄錄」 顯宗 5年(1664) 1月 11日. “專經文臣殿講, 宋昌易略, 李光稷書略, 吳始壽書粗.”

62) 「顯宗改修實錄」 10卷, 5年(1664) 2月 7日. “太和又曰: 辛丑年史記, 因史官尹哲作故, 使其時上番史官李光稷修正矣, 光稷今又作故.”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⁶³⁾ 「세보」에 기록된 그의 사망시점은 역사기록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옥하만록」은 이광직의 사망사실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연경의 옥하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664년 초기까지 보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1 버클리대학 단행본

버클리대학에는 「옥하만록」 1책(13장)이 전하고 있다.⁶⁴⁾ 이 책의 끝에는 저자의 손자인 강세황(1713~1791)이 영조 44(1768)년 2월 23일에 쓴 後識가 있다.⁶⁵⁾ 강세황은 후지에서 “삼가 僮(1745~1808)으로 하여금 한 부를 옮겨 쓰게 하였다.”⁶⁶⁾고 하였다. 빈이란 강세황과 진주류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곧 인(1729~1791), 혼(1739~1775), 관(1743~1824), 빈 등 4명 중의 막내이다.⁶⁷⁾ 그런데 권수제면 우측하단에는 「姜僮」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강빈의 친필본이자 그의 옛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강빈은 영조 49(1773)년에야 증광시로 진사 2등 4위로 입격⁶⁸⁾하게 되는데, 이 책을 베껴 쓴 1768년에는 안산에 거주

63) 李英馥 編,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卷2 (서울: 同派譜所, 1994, 359-60). “(李)光稷, 字子輝, 號希庵, 仁祖壬申(1632)十二月二日生... 孝宗庚寅司馬, 顯宗庚子文科, 典籍正言佐郎判官正郎, 遷拜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 甲辰(1664)正月二十八日卒, 壽三十三.”

64)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 2008), 176-187.

65) 강주, 강백년, 강현, 강세황 등 4대가 燕京을 다녀왔으니 四世朝天之家가 되는 셈이다. 강주가 서장관으로 연경에 간 일은 「燕京錄」(「雪峰遺稿」 卷14)의 “途中感懷”의 詩註에 전한다. 강백년은 이 시주에서 “先君, 曾於萬曆庚子(1600), 以書狀赴京. 不肖孤, 今於庚子, 亦作節使之行, 感而有作”이라고 하였다. 또 강백년, 강현, 강세황 등 3대가 기로소에 입소하였으므로 세상에서 三世耆英之家라고 칭송하였다. 그런데 강세황은 조부인 강백년의 음덕으로 입소하게 된 것이다. 곧 정조는 강세황의 조부인 강백년(1603~1681)이 71세에 기로소에 들어갔으므로(「顯宗實錄」 21卷, 14年(1673) 12月 18日. “遂以吏曹參判姜栢年, 爲耆老所堂上.”) 강세황도 같은 나이에 이곳에 들어가도록(「正祖實錄」, 15卷, 7年(1783) 5月 9日. “特陞姜世晃, 爲都摠府都摠管. 世晃, 故判書姜栢年之孫也. 栢年年七十一, 特教入耆社, 世晃時年又七十一, 故有是命.”) 배려해 주었다.

66) 姜世晃, 「玉河漫錄」 後識. “謹使僮兒, 移寫一通.”

67) 「진주강씨세보」 제4책(국립중앙도서관장, 무구재 古2518/00-2/1). 강세황은 羅州 羅氏와의 사이에 아들 신(信: 1767~1881)도 있었다.

하던 24세의 청년이었다.⁶⁹⁾

그런데 후지에는 고치거나 追記해놓은 곳이 있다. 곧 첫 부분의 “先文貞公”중의 “先”을 먹으로 지우고 “王考”로 고쳐 놓았고, 끝부분의 “時戊子二月二十三日” 뒤에 “孫世晃謹識”를 추기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운 표시가 남아 있는데다 서체가 여타문자와 다르므로 쉽게 알 수 있다. 후일 누군가가 강세황이 이 글을 지었다는 사실과 저자가 강세황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지는 「표암유고」 권5에 「敬書玉河漫錄下」라는 제명으로도 전한다.⁷⁰⁾ 후지의 “先文貞公”이 「경서옥하만록하」에서는 “先祖考文貞公”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혹 이 책의 필사자를 강세황의 둘째아들인 강흔으로 보기도 한다.⁷¹⁾ 그것은 강흔이 그의 문집에서 “옛 부터 진하던 책 상자를 보다가 종이 뭉치에서 (이 책을) 얻었다. 아직 새겨 간행하지는 못했으나 한 부를 잘 베껴 써서 종신토록 가슴에 품고자 생각한다. 다른 날 간행되어 널리 유행되기를 기다리며 먼저 한 마디를 적어 자손들에게 경계한다.”⁷²⁾고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이 글로 보면 당시 강흔은 처음 「옥하만록」을 발견하자 전체를 베껴 뒤 책의 뒷부분에 남기고자 이 글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강흔의 「書玉河漫錄後」가 뒷부분에 수록된 「옥하만록」이 전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세황이 “자손들은 마땅히 한 질씩을 베껴 평생 동안 받들어 행할 것”⁷³⁾을 지시하였으니 강흔의 친필본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본이 발견될 수도 있다. 버클리대학 소장의 이 책은 강세황이 강빈에게 옮겨

68)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69) 강빈의 관료생활은 영조 51(1775)년에 應製에서 수석(「英祖實錄」 124卷, 51年 1月 8日., “應製居首, 姜償命陞六.”) 한 이후이며, 정조 때에 와서 表에서 수석을 하는 등 주로 활동하게 된다(「正祖實錄」 31卷, 14年(1790) 9月 8日. “展拜于景慕宮, 還御春塘臺, 行新舊抄啓文臣親試 … 表居首進士姜償.”).

70) 姜世晃, 「敬書玉河漫錄下」, 「豹菴遺稿」 卷5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288-289.

71) 안세현, “옥하만록해제,”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72) 姜侁(1739~1775), 「書玉河漫錄後」(目錄題는 「題玉河漫錄後」임). 「三當齋遺稿」 권3(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고서(귀) 460 0). “閱舊藏箱篋, 得於爛紙堆中. 縱未及登諸棗梨, 復此繕寫一通, 以思終身服膺. 容待異日刊布廣行, 先記一言, 以戒子孫焉.”

73) 姜世晃, 「玉河漫錄」後識. “凡爲我子孫者, 宜人書一帙, 終身奉行者也.”

쓰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후지에 있고, 또 “강빈”의 인장이 찍혀 있으므로 강흔과는 관련이 없다. 「옥하만록」이 간행되기를 바랐던 강흔의 기대는 그가 37세 되던 1775년, 이른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강세황이 강빈에게 이 책을 베끼도록 한 이유는 “담고 있는 내용은 모두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들로 절실하고 간절하여 후손들에게 교훈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책이) 없어질까 두려워 강빈에게 한 부를 베끼게”⁷⁴⁾ 한 것이었다. 곧 조부가 남긴 교훈적인 계신서를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려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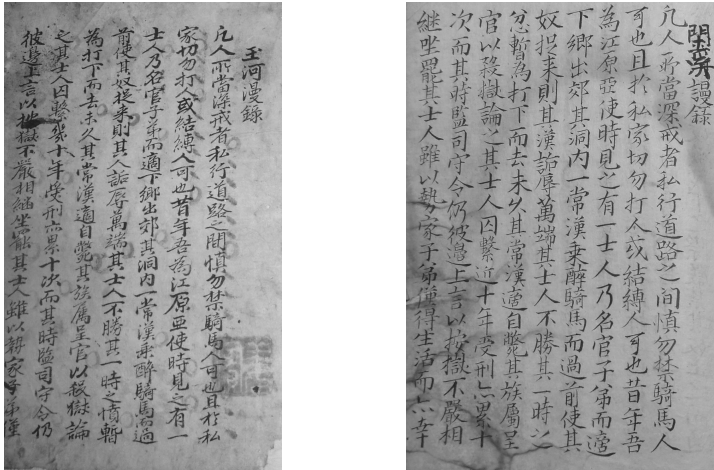
3.2 「한고속집」 수록본

한고속집 1책은 한고를 완성하고 난 뒤 다시 수습한 원고를 계속 엮어 속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속집이라는 제명도 그렇거니와 시문부터 만록까지 다양한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고속집」에는 내용이 전혀 다른 2종의 「玉河漫錄」이 수록되어 있다. 아마 저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글을 연경의 옥하관에서 「옥하만록」이라는 제명으로 함께 집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것은 「주역」의 괘와 1667년까지 자신의 일화를 연결시켜 지은 글이고, 뒤의 것은 버클리대학 소장본과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뒤의 옥하만록은 버클리대학 소장본이 수록하고 있는 23건보다 15건이 더 많은 38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비교대상이 되는 23건의 내용은 상호 문자의 차이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다.

그런데 뒤의 「옥하만록」은 玉河라는 원래의 제명을 閑溪라는 굵은 글씨로 고쳐 놓았다. 곧 처음에는 「옥하만록」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한계만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제명을 고치게 된 것은 내용이 다른 두 종의 「옥하만록」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곧 앞의 것의 제명은 그대로 두고, 뒤의 것은 한계라는 저자의 호를 붙여 둘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행본 「옥하만록」의 존재를 알지

74) 姜世晃, 「玉河漫錄」後識. “所錄皆戒愼之語, 切實懇勤, 無非垂訓於後孫者也 … 恐致泯滅, 謹使僮兒, 移寫一通.”

못하면 「옥하만록 과 「한계만록 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계로 고쳐진 「옥하만록」은 “제명이 동일한 연세대학교 소장의 「한계만록」의 일부를 절록한 것”⁷⁵⁾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친 시기는 별도의 「한계만록」이 숙종 5 (1679)년 경에 15권4책으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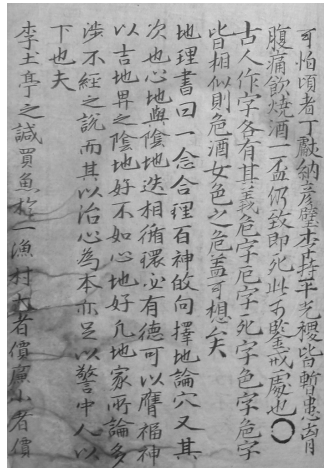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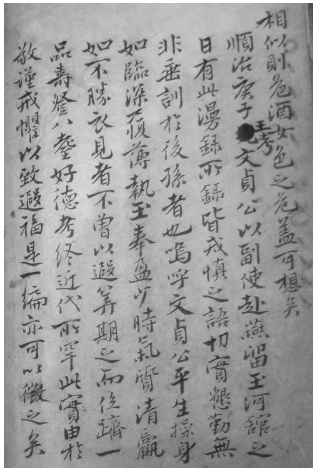


<사진 1> 두 전본의 첫째 면⁷⁶⁾

본고에서 논급할 「옥하만록」은 38건의 계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 곧 한계로 고쳐놓은 뒤의 「옥하만록」이다. 수록된 38건 중 앞의 23건과 뒤의 15건은 쉽게 구분된다. 그것은 필사자와 필사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곧 앞의 23건은 白圈을 찍어 각각의 내용을 구분한데 비해 뒤의 15건은 백권은 없이 내용이 끝나면 행을 바꾸어 구분하고 있다. 또 앞의 23건은 서체가 세련되지 못한데다 오자가 더러 보이는데 반해 뒤의 15건은 서체가 세련되고 안정되어 있다.

75) 강석중, 「한고해제(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2)」(서울: 평민사, 2008), 425-429.

76) 왼쪽은 버클리대학 소장의 단행본, 오른쪽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한고속집」 수록본임.



<사진 2> 두 전본의 제23건 수록면 77)

뒤의 15건을 「옥하만록」의 범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이들도 계신의 글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15건 중 모두 8건에서 계신하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곧 제 1건에서 “중인이하를 조심하라(警中人以下).”, 제 6건에서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로 삼으라(可以爲鑑戒也夫).”, 제 10건에서 “경계하라(以爲OO之戒).”, 제 11건에서 “교훈이 되는 본보기로 삼으라(亦可以鑑戒處也).”, 제 12건에서 “한 번의 웃음도 또한 가벼이 할 수 없다(一咲, 亦不可輕如是也).”, 제 13건에서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로 삼으라(以爲鑑戒).”, 제 14건에서 “(기록해 둔 글이) 없어서 전하지 않을까 두려워 기록한다(恐其泯, 而無傳以錄之).”고 하였다. 마지막 제 15건에서도 “무엇보다 마땅히 경계하라(尤宜警戒也).”고 하였다. 이렇게 뒤의 15건의 내용 중 8건에서 경계, 주의 또는 본보기로 삼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7건 역시 주의하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을 뿐 계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뒤의 15건 역시 저자가 「옥하만록」에 수록하고자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뒤의 15건도 계신의 내용이고, 더욱이 강백년의 인장이

77) 왼쪽은 버클리대학 소장의 단행본, 오른쪽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한고속집」 수록본임.

적혀있으므로 이 「옥하만록」을 定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버클리대학 소장본과 「한고속집」 수록본의 내용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강세황의 집안에 전하던 「옥하만록」이 23건만이 수록된 초기의 사본이었거나 아니면 그것의 전사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 「옥하만록」은 버클리대학 소장본과 문자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대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두 전본의 문자대비

차례	버클리대학 단행본	「한고속집」 수록본	문자의 차이 혹 오류본
1	則其人詬辱萬端 其士人囚繫幾十年	則其漢詬辱萬端 其士人囚繫近十年	其人和 其漢 幾十年과 近十年
2	言語極不順	言語不順	極不順과 不順
3	亦可鑑也	此亦可鑑者也	可鑑과 可鑑者
4	其漢切項	其漢絕項	切項과 絕項
5	曳其頭髮而遣	曳其頭髮而遣之	而遣과 而遣之
6	不從不杖, 而亦不推責	不但不杖, 亦不推責	不從과 不但 而亦과 亦
7	其處事昏錯	其處皆錯	其處事와 其處
8	幾死僅免 云云者	幾死幸免 云者	僅免과 幸免 云云과 云
9	有爭誥之事	有爭詰之事	버클리대학 단행본의 오자
10			동일함
11	隣有黃姓忘其名 必擇端正之士	隣有黃姓一人 … 忘其名 必擇正之士	黃姓과 黃姓一人 「한고속집」 수록본의 탈자
12	年未三十餘歲而歿 結爲心腹	年纔三十餘歲而歿 結爲腹心	未三十과 纔三十 心腹과 腹心
13	被爲其因嫌告訐 其因些少忿爭	被其仍嫌告訐 其仍些少忿爭	被爲其因과 被其仍 其因과 其仍
14	貪權貪權 皆以其黨類 附狗苟者併首就戮	貪權 皆以其儻類 附狗苟者之併首就戮	버클리대학 단행본의 중복 其黨類와 其儻類 苟者와 苟者之
15	禮男女授不親之訓 聖賢防微之意	禮男女授不親之訓 聖訓防微之意	「한고속집」 수록본의 탈자 聖賢과 聖訓
16	身着縗衣 或所圖者吉地 苟且圖規 說曰	身着衰衣 或所爭者吉地 苟且圖占 曰說	縗衣와 衰衣 圖者와 爭者 圖規과 圖占 「한고속집」 수록본의 도치

차례	버클리대학 단행본	「한고속집」 수록본	문자의 차이 혹은 오류본
	名公巨卿 安奉之道	名卿巨公 奉先之道	「한고속집」 수록본의 도치 安奉과 奉先
17	趙時菴 幸賴相位吳允謙月沙 且妄論人是非 些少口頭語	趙參奉 幸賴相位吳允謙及月沙 且妄論是人非 些少口頭言	趙時菴과 趙參奉 吳允謙月沙와 吳允謙及月沙 「한고속집」 수록본의 도치 「한고속집」 수록본의 오자
18	洪東萊株一	東洪萊株一	「한고속집」 수록본의 도치
19	妄信奴僕之言 日暮先投店 投宿於鄉族	妄愼奴僕之言 日暮先投宿 投宿於鄉漢	「한고속집」 수록본의 오자 投店과 投宿 「한고속집」 수록본의 오자
20	因漁獵 浮灘地名江邊 適出乘醉	仍漁獵 浮灘江邊 適出入乘醉	因과 仍 浮灘地名과 浮灘 「한고속집」 수록본의 첨자
21			동일함
22			동일함
23	死字色卮字	死字色字卮字	버클리대학 단행본의 탈자

<표 1>에서 보듯이 23건의 내용 중에서 문자가 동일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건은 모두 40곳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 분명한 오류는 버클리대학 단행본이 3곳, 「한고속집」 수록본이 10곳이다. 특히 「한고속집」 수록본은 중후반부에 들어서 필체가 서툴러지면서 오류가 많아지고 있다.

4. 내용과 가치

4.1 내용

「옥하만록」에는 저자가 강원아사⁷⁸⁾로 재직할 때 직접 겪은 폭력사망 사건부터

78) 아사란 관찰사를 보좌하며 수령을 규찰하는 임무를 지닌 벼슬로 副使를 일컫는다. 저자는 인조 5(1627)년에 문과에 합격한 뒤 江原亞使, 곧 江原都事를 역임한 시기는 인조

할아버지의 업을 이어야 한다는 당부까지 모두 38건이 수록되어 있다. 초반부는 사망에 관련된 사례들을 모으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중반부 이후부터는 내용에 따른 구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엮어 놓았다. 이렇게 편성기준 없이 수록된 38건의 내용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는 생소한 내용이 많아 매우 흥미롭다. 아쉬운 점은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곧 1-6번째 내용에서는 常漢이나 노비 등 중요하지 않는 인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름을 밝힐 만한 명관자제, 남쪽지방 수령의 아들, 위동, 수령의 자제, 장자, 무인 등도 익명으로 기록해 둔 것이다.

그러나 7번째 내용부터는 당시 비교적 비중 있는 정치적 사건과 개인적으로 면식이 있는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증,⁷⁹⁾ 윤위, 신이간, 이유림, 황모[황현], 기진경, 기진홍, 전창군,⁸⁰⁾ 박자한, 이이첨, 한찬남 등,⁸¹⁾ 이종언, 김홍육, 조상우, 홍만영, 유도삼, 서변, 이광준, 박정린, 황수, 황후석, 정언벽, 이광직, 이지함, 김우웅, 정경세, 오백령, 이창정, 이준, 이원, 이국필 등이다. 심지어 김시양 첩의 아들, 정종원의 외아들, 외조모 동복 오빠의 아들 이라고까지 구체적인 관계를 들기도 하였다. 이 중에는 저자에게 매우 혹평을 당한 인물도 있다.⁸²⁾ 이렇게 인명을 공개하며 혹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집안에서만 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 38건의 내용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15(1637)년 여름 이후 인조 18(1640)년 11월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자의 나이는 삼십대 중후반으로 이 글을 집필하기 20여 년 전의 일이 되는 셈이다.

79) 『孝宗實錄』 20卷, 9年(1658) 9月 25日. “前掌令李曾(1610~1658), 與載寧民崔弘源, 爭奴婢相訟. 曾使其奴撲, 殺弘源, 于都市中, 乘夜投江, 欲滅其迹. 捕盜大將李浣, 捕其奴以聞, 命拿鞠李曾. 曾不服, 累受刑訊, 斃於獄.”

80) 柳廷亮(1591~1663).

81) 李爾瞻(1560~1623), 韓纘男(1560~1623), 李偉卿, 徐國楨, 韓正國 兄弟, 鄭造, 尹詎의 무리 등이 언급되어 있음.

82) 특히 李有林(?~1623), 黃某[黃玆], 奇震慶, 奇震興 등에 대해서는 아주 혹평하고 있다.

<표 2> 「옥하만록」에 수록된 내용분석

차례	간략한 내용	등장인물	내용 및 결과(시기 또는 지역)	계신내용
1	폭력사망	명관자제, 常漢	가해자인 명관자제의 수형(강원)	폭력을 금지할 것
2	폭력사망	수령아들, 衛童, 상한	가해자인 호위하던 종이 사형됨	종의 폭력을 방지할 것
3	폭력사망	수령아들	가해자인 수령아들이 겨우 목숨을 건짐(嶺東)	폭력을 금지할 것
4	비폭력 사고사	長者, 노비, 상한	종이 폭행하려 했으나 말린 뒤에 상한이 사고로 죽음	종의 폭력을 방지할 것
5	폭력사망	무인, 상한	가해자인 무인은 옥사하고 가산은 몰수됨(公州)	폭력을 금지할 것
6	병약자 자연사	저자, 병약자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살인죄를 면함(청풍)	사람을 보아 선처할 것
7	살인 및 시체유기	李曾, 하인	소송상대방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종은 사형되고, 이증은 옥사함(1658)	관청에 사실대로 보고할 것
8	살인	尹偉	婢夫를 살해한 죄로 윤위는 변방에 충군됨	신분을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 것
9	과실치사	申易簡	신이간은 평생을 빈곤하게 생활함(청주)	과실도 하지 않도록 할 것
10	음주사망		음주 후 자연사한 사건인데도 同接 유생들이 수감됨(燕喜宮 인근)	同接을 선택할 때 주의할 것
11	반역 처형	李有林, 黃某[黃玠]	역모하다 처형됨(1623)	단정한 사람을 친구로 사귄 것
12	교만한 형제의 불행	奇震慶, 奇震興, 全昌君	기진경은 요절, 기진흥은 추국 중 사망 ⁸³⁾	교만하지 말 것
13	貪財者 극형	朴自韓	계산을 탐하던 박자한이 무고한 탓에 극형을 당함(1656년경 천안)	남의 계산을 탐하지 말 것
14	탐관직자 극형	李爾瞻, 韓纘男 등	관직을 탐한 자들이 죽었고, 별문의 화를 당함(1623)	관직을 탐하지 말 것
15	쌍륙의 폐해		과부와 종질의 불륜남녀 도망(죽주)	잡기를 금할 것
16	풍수맹종자의 패가	李宗彦	선친 묘 이장 후 아들, 손자가 사망함(천안)	풍수가의 말을 추종하지 말 것
17	상소나 사적소의 내용주의	金弘郁, 趙相禹	김홍욱은 장형으로 사망하고, 조상우는 고위직 진출을 못함	疏를 쓸 때는 과격한 문장을 쓰지 말 것
18	벗들 간의 신중치 않은 말	洪萬英, 柳道三, 徐佻	홍만영은 장살되고, 서번은 처형됨(1652)	벗 사이도 신중하게 말할 것
19	숙박지로 인한 피해	李光俊, 朴庭獫, 黃漸	화적의 침입으로 이광준은 부상, 박정린은 사망, 황수는 치욕스런 탈출(청주 외)	여행 중 숙박할 장소를 주의할 것
20	익사 등	金時讓, 첩의 아들 외 ⁸⁴⁾	물에 빠져 죽거나 뱀에 물려 죽음(忠江, 會德, 浮灘, 文義) ⁸⁵⁾	강과 물 주위를 조심할 것
21	승선 시에 유념		배에서 다투거나 바람이 심할 때 승선하지 말 것	승선 시에 주의할 것
22	병중에 소주 복용 후 사망	丁彦璧, 李光稷	홍복통에 소주 한 잔을 마신 정언벽과 이광적이 즉사함	병중에는 음식을 주의할 것

차례	간략한 내용	등장인물	내용 및 결과(시기 또는 지역)	계신내용
23	字에 좋지 않은 문자		危, 厄, 死, 色, 厄 등의 문자는 개인의 字로서는 좋지 않음	字를 지을 때 신중할 것
24	地家の 말을 주의		지가들이 논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법도를 벗어남	治心을 근본으로 삼을 것
25	물고기 장사의 가르침	李之菡	이지함이 겪은 주역에 고명한 도사였던 물고기 장사 이야기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교유할 것
26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음	金宇顛	병든 말을 높은 가격에 팔았던 사실을 뒤에 알고 김우옹이 도로 물려 줌	정직하게 거래할 것
27	남의 허물을 발설하지 않음		중의 허물도 감싸야 한다는 주자의 말이 있듯이 남의 허물은 말하지 않아야 함 ⁸⁶⁾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28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오백령	鄭經世, 吳百齡	정경세가 과거시험장에서 보았던 덕량이 큰 오백령의 이야기	덕량을 기를 것
29	올바름을 잃으면 몸을 버림		河間의 부인이 한번 잘못하여 더 나빠졌듯이 선비도 올바르게 잃지 않아야 함 ⁸⁷⁾	정직하게 수신할 것
30	재물을 소유하여 화를 당함		옥을 가진 것은 죄가 없으나 옥을 가진 것이 죄가 된다는 주나라 속담을 들어 재물을 탐하지 말 것을 주의	탐재하지 말 것
31	이창정이 厚義하게 대함	李昌庭	자기를 잘못 알고 찾아 온 사람에게도 딸의 혼수 비용을 도와 준 이창정	의를 두텁게 할 것
32	이창정이 베풀어 줌	이창정 李滄	이창정이 자신의 부하이자 효자인 이준에게 베풀어 줌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복이 자손에게 미치도록 할 것
33	믿음이 있어서 수령이 도와 줌	남해수령	한미한 선비가 남해수령의 도움으로 곤궁을 벗어났고 또 급제해서는 수령의 천거로 거제수령이 됨	신뢰를 쌓을 것
34	조고가 이사를 죽인 교훈		조고가 이사를 죽인 것을 교훈으로 삼을 것	주위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고 대처할 것
35	한 번의 웃음도 신중		平原君과 齊頃公의 여인들이 한 번 웃은 것 때문에 죽게 됨	작은 행동도 신중할 것
36	喪中에 이익을 취함	李沅	아버지의 상중에 소금수송용 배를 만들어 이익을 취한 이원이 현부의 장관이 되지 못함	작은 잘못도 저지르지 말 것
37	李國弼의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	[姜籀]. 이국필 ⁸⁸⁾	선친에게 奴馬를 빌어준 뒤 돌려받지 못한 이국필이 개의치 않았음	이국필의 덕량을 잊지 말 것
38	조부의 일		조부가 모아놓은 경적과 서화 등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祖業을 보호하고 지킬 것

83) 『孝宗實錄』 7卷, 2年(1651) 12月 18日. “推鞠罪人震輿不服, 徑斃. 上以逆狀已著, 命施緣坐, 籍沒之律.”

84) 金時讓(1581~1643) 첩의 아들, 鄭宗遠의 외아들, 외조모 同腹 오빠의 아들, 黃後石, 오씨 등.

한편 저자는 「한계만록」에서는 인용문의 출처를 문구의 말미에 표시하였으나 「옥하만록」에서는 인용문구의 전후에 밝히거나 아니면 아예 밝히지 않았다. 저자가 인용한 문헌을 통해 계신의 바탕을 어디에서 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으므로 차례로 살핀다. 먼저 반역한 이유립과 황모[황현]가 죄를 받아 처형되었다는 11번째 내용에서는 “옛말에 이르지 않았던가? 불길한 사람은 뱀과 전갈같이 피하라(古語不云乎? 不吉之人, 如避蛇蝎).”고 하였다. 이 글은 「소학」에 있는 문구⁸⁹⁾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박자한이 재물을 탐해 소송을 일으키다 극형을 당했다는 13번째 내용에서는 “치아 사이에 두기에는 부족하다(不足置齒牙間).”고 하였다. 이 글은 상대방의 말에 대답하거나 논평할 가치가 없을 때 하는 말로 「사기」⁹⁰⁾에 나온다. 쌍륙 놀이를 하다 불륜을 저지른 15번째 내용에서는 “예에 남녀는 친함을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禮男女授受不親之訓).”고 하였다. 이 글은 「맹자」에 나오는 글⁹¹⁾의 변형이다. 이종언이 풍수가를 지나치게 믿어 오히려 자손에게 해가 되었다는 16번째 내용에서는 “좋은 사람은 좋은 땅을 만난다(地家書有說曰, 吉人逢吉地).”거나 “음지가 좋다 해도 심지가 좋은 것만 같지 못하다(陰地好, 不如心地好).”고 하였다. 이 글은 「발미론」⁹²⁾에 나오는 글인데 24번째 내용에서도 다시 나온다. 김홍욱과 조상우가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사망 또는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17번째 내용에서는 “침묵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전하라(其默足以容).”고 하였다. 이 글은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침묵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전하라.”⁹³⁾는 「중용」의 축약이고, “많은 일이 사소한 말로 인하여 까닭도 없이

85) 충강, 회덕, 浮灘, 文義(청원) 등으로 보아 청풍군수(1648) 또는 충청감사(1653) 시절의 이야기로 보임.

86) 朱子(1130~1200)가 「居家必用」에서 비복의 잘못(婢僕違過)을 감싸야 한다고 한 말을 들어 이야기함.

87) 柳宗元(773~819), 「河間傳」.

88) 姜籛(1567~1650). 李國弼은 강주의 異姓從兄이라고 함.

89) 「小學」嘉言, 廣立教(11章). “吉也者 … 避惡如畏蛇蝎, 或曰: 不謂之吉人, 則吾不信也.”

90) 司馬遷, 「史記」列傳, 「劉敬叔孫通列傳」.

91) 「孟子」離婁上 17章. “男女授受不親, 禮也.”

92) 蔡元定, 「發微論」, 제15권 感應篇. “諺云 陰地好, 不如心地好. 此善言感應之理也.”

93) 「中庸」第27章. “是故居上不驕, 爲下不倍. 國有道其言足以興, 國無道其默足以容. 詩曰,

큰 일이 된다.”⁹⁴⁾는 글은 옛말을 인용하여 보충한 것이다. 이광준 등이 여행행로와 투숙지에서 주의하지 못해 번고를 당했다는 19번째 내용에서는 “옛사람이 길을 가는 시에 이르기를, 다리를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리고, 길이 있으면 배를 타지 말며, 날이 저물면 먼저 숙박하고, 닭이 울어도 다시 하늘을 살핀다.”⁹⁵⁾고 하였다. 이 시는 당나라 이후 문자가 약간 바뀌어 전하는데, 아버지 또는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아들 또는 남편에게 주는 시로 알려져 있다.

탐재를 주의하라는 30번째 내용에서는 “(옥을 가진) 필부는 죄가 없으나 옥을 가진 것이 죄가 된다(匹夫無罪, 懷璧其罪).”라고 하였다. 이 글은 「춘추좌씨전」에서 주나라의 속담을 인용⁹⁶⁾한 것인데 재물을 가졌다가 화를 당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32번째 내용에 나오는 “덕행을 쌓은 집안은 자손에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餘慶).”고 한 글은 「주역」⁹⁷⁾에 나오는 글을 축약한 것이다. 조고가 이사를 속인 점은 경계할 만하다면서 남의 마음을 지레 짐작하고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한 34번째 내용에서는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경계하지 않고, 남이 나를 불신할까도 억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먼저 깨닫는 사람이라야 현명하지 않겠는가?”⁹⁸⁾라는 공자의 말을 들어 경계로 삼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논어」에서 인용한 글이다. 35번째 내용에서는 평원군의 미인첩이 이웃의 절름발이를 보고 웃자 그 절름발이는 첩의 머리를 구하였던(죽이라고 한) 「사기」의 기사⁹⁹⁾와 齊頃公이 부인에게 휘장 막 뒤에 숨어 郤子의 다리 저는 모습을 보게 하자 부인이 크게 웃으므로 극자는 원수로 보복하고자 한 춘추좌씨전 의 기사¹⁰⁰⁾를 들어 한 번의 웃음도 가벼

既明且哲，以保其身。其此之謂與。”

94) “古語曰，多仍些少口頭語(「한고속집」 수록본은 “口頭言”), 等閒做出老大事.”
95) 古人行路詩有曰；當橋須下馬，有路莫乘船，日暮先投店，雞鳴更看天。
96) 「春秋左傳」, 桓公 10年. “周諺有之, 匹夫無罪, 懷璧其罪.”
97) 「周易」, 坤卦 文言. “積善之家, 必有餘慶.”
98) 「論語」, 憲問. “不逆詐, 不億不信, 抑亦先覺者, 是賢乎.”
99) 「史記」 平原君虞卿列傳 第16. “平原君趙勝者, 趙之諸公子也 … 平原君家樓臨民家, 民家有鬻者, 槃散行汲, 平原君美人居樓上, 臨見, 大笑之. 明日, 覽者至平原君門, 請曰: 臣聞君之喜士, 士不遠千里而至者, 以君能貴士而賤妾也. 臣不幸有罷癯之病, 而君之後宮臨而笑臣, 臣願得笑臣者頭 … 於是平原君, 乃斬笑覽者美人頭, 自造門進覽者, 因謝焉. 其後門下, 乃復稍稍來.”

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주자(1130~1200)의 글과 유종원의 「하간부인」 등도 인용하는 등 저자는 계신에 관계되는 말이면 사서와 경서, 역사서, 지가서는 물론 오래된 시구에 이르기까지 인용하면서 자손들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4.2 가치

「옥하만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조목들을 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소개해 놓은 한 집안의 계신서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계신서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집안의 계신서라는 범주를 벗어난 이 책의 가치가 더 돋보인다. 그것은 강세황이 “기록 중에는 속된 말을 섞어 사실대로 정확하게 베끼고 자구를 꾸미지 않았다.”¹⁰¹⁾고 하였듯이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곧 한 사건과 그 배경 그리고 인물의 사망원인과 행태 등이 꾸밈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사건이나 인물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관심을 끌만한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李曾(1610~1658)의 옥사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곧 7번째 내용에는 이증의 종이 이증의 소송당사자인 최홍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일에 대해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증이 옥사한 사건을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효종실록」에는 이증이 종에게 이 모두를 使噉한 것으로 되어 있고,¹⁰²⁾ 효종도 “전후의 일은 이증이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대부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다.¹⁰³⁾ 그러나 저자는 “그 뒤 본래의 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종에게 소송 상대방을 오게 하였으나 상대방이 오지 않자

100) 「春秋左傳」宣公.“十七年春，晉侯使郤克，徵會于齊。齊頃公，帷婦人使觀之。郤子登，婦人笑於房。獻子怒，出而誓曰，所不此報，無能涉河。”郤子(?~紀元前 587)의 시호가 ‘獻’이어서 사거에서 ‘郤獻子’라고 일컬음.

101) 姜世晃, 「玉河漫錄」, 後識. “錄中, 雜以俚語, 信筆直寫, 未嘗雕琢字句.”

102) 「孝宗實錄」 20卷, 9年(1658) 9月 25日. “前掌令李曾, 與載學民崔弘源, 爭奴婢相訟. 曾使其奴撲, 殺弘源于都市中, 乘夜投江, 欲滅其迹. 捕盜大將李浣, 捕其奴以聞, 命拿鞫李曾. 曾不服累受刑訊, 斃於獄.”

103) 「承政院日記」 孝宗 9年 9月 26日. “上曰: 前後之事, 無非李曾所爲也 … 士大夫之恥也.”

서로 따지다 치고받던 중에 죽게 된 것이었다 … 처음 죄는 소송을 건 사람에게 있었다. 종이 때려 죽은 뒤에 이증이 종을 묶어 형부에 보내었던들 죽음을 면하였을 것이다.”¹⁰⁴⁾고 적어 놓았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처음 잘못은 소송 상대방이었고, 이증의 종이 소송상대방과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었다. 다만 이증이 형부에 노비를 압송시키지 않은 잘못 때문에 자신이 殺人教唆者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저자의 이러한 기록은 이증의 형인 이석이 자신의 집에 동생의 빈소를 마련하고 화려한 상여까지 마련하여 장례를 치르다 파직되었고, 동생 이증의 직명도 모두 회수되었다¹⁰⁵⁾는 기록과 함께 당시 이증이 사주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설득력을 더한다. 곧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동생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렀던 것은 동생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후일 포도대장 이완이 범죄자인 이증을 지혜롭게 체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준 사건으로 변질되어 전하기도 한다.¹⁰⁶⁾ 또한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세기 중기(1658)에 평민이 사헌부의 정4품인 장령¹⁰⁷⁾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 수 있다. 향후 이증의 옥사사건은 이 기록을 근거로 삼아 평민과 양반의 소송문제와 함께 다방면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다.

둘째, 급사한 인물들의 사망원인을 밝혀 놓았다. 곧 제22번째 내용에서 정언벽(1612~1652)과 이광정이 급사한 원인을 남겨 놓은 것이다. 정언벽은 나주정씨 9대 옥당 중에서 7번째로 꼽히는 인물로 1652년 7월 26일까지 「효종실록」에 등장한다.¹⁰⁸⁾ 그러나 4일이 지난 7월 30일에 41세의 나이로 사망¹⁰⁹⁾하였지만 그 사망

104) 「玉河漫錄」 제7번째 내용. “而其後詳聞其本情, 則非有意殺之也. 使其頑奴, 招來其相訟之人, 則其人不肯來, 其奴相詰亂打, 仍致殞命之後 … 始招訟者, 固其罪也, 而及其奴打殺之後, 曾也若縛其奴, 送于刑部, 則庶或免死.”

105) 「孝宗實錄」 21卷, 10年(1659) 2月 18日. “上召對玉堂講官, 講心經. 講訖, 大司諫李應著啓曰: 凡負重罪, 而死於杖下者, 不敢停尸於城中, 乃所以畏國法也. 李曾雖未及正法, 既斃之後, 卽當出置於城外, 而偃然成殯於其家. 至於銘旌, 書以春坊顯官, 發引時, 敢用華美喪輿 … 請其兄李皙罷職不敘, 李曾職名盡行追奪. 上從之.”

106) 김려, 「寒臯觀外史」 v.70. “李相浣判刑曹咸鏡道嚴姓人有與掌令李曾訟田.”

107) 「孝宗實錄」 20卷, 9年(1658) 8月 15日. “以金南重爲大司憲, 李曾爲掌令.”

108) 「孝宗實錄」 9卷, 3年(1652) 7月 26日. “諫院[大司諫陸行善、獻納丁彥璧、正言洪葳]啓

원인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이광직도 1664년 정월 28일에 33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실만 확인될¹¹⁰⁾ 뿐 급사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 다 갑작스런 흉복통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즉사하였다.”¹¹¹⁾고 밝혀놓아 이 두 사람이 사망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早死한 기진경, 진흥 형제의 사망과 과거 행태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남겨진 역사기록에는 동생인 기진홍의 죽음밖에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 기록을 통해 형제의 젊은 시절의 행태와 형의 사망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행주기씨대동보」에 따르면 奇協(1572~1627)의 큰 아들인 기진경은 “蔭水庫別提 忌四月二十七日”과 같이 생전의 관직과 사망한 월일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부인은 함양 朴徹의 딸이며, 둘 사이에는 松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송의 후사가 없고, 檀이 系子로 입적된 사실로 보아 송은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또 둘째 아들인 기진홍은 급제사실과 함께 “罪死”, 그 하단에는 “無后”라고 되어 있다.¹¹²⁾ 곧 죄로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 두 형제에 대하여 젊은 시절의 행태는 물론 “기진경은 30세가 안되어 요절하였는데 관직은 별좌에 머물렀으며 또한 무자식”,¹¹³⁾ “기진홍은 비록 등제하였으나 김자점에게 붙었다가 결국 심복이 되더니, 경기수사로 있다가 역모에 관련되어 극형을 받고 죽었다.”¹¹⁴⁾고 기록해 두었다. 기씨 형제에 대한 저자의 비교적

曰 … 上不從.”

109) 丁彥璧墓碣, “壬辰七月三十日卒壽四十一.”

<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1.jsp>

“彥璧 光海壬子(1612)十二月十一日生 … 壬辰(1652)七月三十日卒.”(동편찬회, 『押海丁氏大同譜』 卷15, 서울, 정병석, 2002, 932).

110) 李英復 編,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卷2 (서울: 同派譜所, 1994, 359-60). “(李)光稷 … 甲辰(1664)正月二十八日卒, 壽三十三.”

111) 『玉河漫錄』 제22번째 내용. “丁獻納彥璧, 李持平光稷, 皆暫胸腹痛, 飲燒酒一盃, 仍致即死.”

112) 同所 編, 『幸州奇氏大同譜』 元 (서울: 幸州奇氏大同譜所, 1982), 63-64.

113) 『玉河漫錄』 제12번째 내용. “其後震慶, 則年未(纔)三十餘歲而歿, 官不過別坐, 且無子.” 『孝宗實錄』 8卷, 3年(1652) 1月 20日. “答曰: 逆賊奇震興, 親子養子, 竝無之乎? … 義禁府覆啓曰: 震興之既無子女, 又無養子之狀, 人所共知.”

114) 『玉河漫錄』 제12번째 내용. “震興則雖登第, 而諂附賊點, 結爲心腹(腹心), 以京圻水使, 罹於賊點逆獄, 被極刑而死.”

상세한 기록은 거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곧 죽음과 박복은 결과이지만 이 결과는 자신들이 초래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반역으로 죽은 이유림, 황현과의 인연, 풍수를 맹종하다 패가한 이종언, 김홍욱과 조상우가 출세하지 못한 배경, 여행 중 숙박처를 잘못 정하여 낭패를 본 이광준과 사망한 박정린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진 황수, 아버지의 상중에도 소금수송용 배를 만들어 이익을 취한 이원 등의 기록은 여타 기록에서는 보기 어려운 소중한 기록이다. 또 이지함, 김우옹, 정경세, 오백령, 이창정, 이국필 등의 일화는 각 인물의 내면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익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 책에 수록된 38건의 내용은 집안의 계신서로서 뿐 아니라 보편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도 가진다고 하겠다.

물론 「옥하만록」은 집안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인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집안의 계신서라는 한계점도 있다. 곧 31-32번째 내용에서 저자의 재종인 李濬을 도와준 이창정(1573~1625)을 두 번에 걸쳐서 매우 의롭고 후덕한 인물로 칭송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물을 평가한 기준은 저자의 친인척에 대한 지원이었다. 또 선친에게 奴馬를 빌려 준 선친의 異姓從兄인 이국필의 덕량을 자손들은 잊지 말라고 한 37번째 내용과 조부의 업을 이으라는 마지막 38번째 내용은 이 책이 한 집안의 계신서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5. 결 언

17세기 중후기에 주로 활동했던 강백년은 평소 검소함을 몸소 실천한 청백리 이자 문장가였다. 그는 1660년에 동지부사로 연경에 갔을 때 숙소인 옥하관에서 「옥하만록」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집필한 의도는 자손들의 계신, 곧 몸가

「孝宗實錄」 7卷, 2年(1651) 12月 18日. “推鞠罪人, 震興不服, 徑斃.”

짐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이었지만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내용 중에는 중요한 기록들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주로 서지학적 관점에서 「옥하만록」을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현재 「옥하만록」은 두 종의 필사본이 공개되어 진한다. 한 종은 단행본으로 미국의 버클리대학에 전하고, 다른 한 종은 앞의 단행본보다 90여년 앞선 「한고속집」에 수록되어 있다. 전자는 저자의 증손인 강변의 친필본이자 그의 옛 소장본이다. 모두 23건의 내용과 강세황의 後識가 실려 있다. 후자는 저자의 옛 소장본으로 모두 38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두 전본 간에 차이나는 15건을 보니 이 역시 계신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인장이 찍혀있는 「한고속집」에 수록된 「옥하만록」을 定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옥하만록」을 완성한 시기는 강세황이 후지에서 “문정공이 순치 경자년(1660)에 연경의 옥하관에서 머물 때 기록한 바”¹¹⁵⁾라는 기록을 근거로 삼아 저자가 연경에 갔던 1660년과 그 이듬 해 쯤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22번째 내용에서 1664년에 있었던 이광직의 사망사실을 수록해 놓은 사실로 보아 연경의 옥하관에서 집필을 시작하여 귀국 후 최소한 1664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 보완하여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버클리대학 소장의 단행본과 「한고속집」 수록분 등 두 종의 「옥하만록」 간에는 문자가 다른 곳이 있다. 20건의 내용에 걸쳐 40곳에 차이가 보인다. 이 중에서 분명한 오류는 버클리대학 단행본이 3곳, 「한고속집」 수록본이 10곳이다. 특히 「한고속집」 수록본은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필체가 서툴고, 오류 역시 많아지고 있다.

넷째, 간본 「한계만록」에서 고급의 명언과 출처를 밝혔듯이 「옥하만록」에서도 각 내용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명언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명언들은 「논어」, 「맹자」, 「중용」, 「주역」, 「춘추좌씨전」, 「소학」, 「사기」, 「발미론」 등에서 인용한 것들이었으며, 이외에도 옛말, 옛 시구까지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째, 17세기 조선의 생활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이 많으며, 사건

115) 姜世晃, 「玉河漫錄」 後識. “順治庚子先文貞公, 以副使赴燕, 留玉河館之日, 有此漫錄.”

과 인물에 대한 기술내용은 사료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증의 옥사, 정언벽과 이광정의 급사, 기진경, 진흥 형제의 과거 행태와 사망사실 등은 기존의 역사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이다. 다만 계신서이다 보니 집안의 비망기 성격의 사사로운 내용도 없지 않다.

여섯째, 「한고속집」에는 두 종의 「옥하만록」이 수록되어 있다. 앞의 것은 「주역」의 괘와 1667년까지 자신의 일화를 연결시켜 지은 글이고, 뒤의 것은 버클리대학 소장의 단행본과 동일한 내용의 「옥하만록」이다. 그런데 뒤의 것은 후대에 옥하라는 제명위에 한계라고 고쳐 놓았다. 이렇게 고친 시기는 15권 4책의 「한계만록」이 간행된 1679년경 이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의 「옥하만록」이 전하는 것은 저자가 연경의 옥하관에서 동일한 제명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글을 집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자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中庸」, 「論語」, 「孟子」, 「周易」, 「小學」, 「春秋左傳」, 「史記」.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2」. 서울: 평민사, 200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2. 족보

「진주강씨세보 (무구재 古2518/00-2/1)」, 「진주강씨족보」, 「강씨사적 보감」, 「강은렬공실기」, 「은렬공파세보」, 「진산강씨세감」, 「진양강씨족보」, 「진주

(진양)강씨세보, 「진주강씨세보: 속찬1」(이상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押海丁氏大同譜」, 서울: 정병석, 2002.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서울: 동파보소, 1994.

「幸州奇氏大同譜」, 서울: 동소, 1982.

3. 저서 및 논문

강백년. 「玉河漫錄」(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閑藁續集」(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閑溪謾錄」(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閑藁」(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燕行路程記」(연행록전집 ; 19)

「雪峰遺稿」(韓國文集叢刊103).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3.

강 혼. 「三當齋遺稿」(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강세황. 「豹菴遺稿」.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豹菴 姜世晁」. 서울: 우일출판사, 2003.

박동혁, 서신혜 역주. 「강세황산문전집」. 서울: 소명출판, 2008.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 2008.

이충렬. 「간송 전형필」. 서울: 김영사, 2010.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제19책.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정 민, 박동욱 편역. 「아버지의 편지」. 서울: 김영사, 2008.

강석중. “설봉 강백년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0집(2006). 한국
한시학회.

송인창. “설봉 강백년의 철학과 청백리정신.” 「인문과학논문집」 34집(2002). 대
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